

국외출장복명서

1. 출 장 자 : 김광준 부부장검사(연구위원)
2. 출장기간 : 2007. 10. 11(금) ~ 10. 20(토) (9박10일)
3. 출장국가 : 프랑스, 영국
4. 출장목적
 - "조직폭력범죄 대책에 관한 연구" 및 "조직폭력범죄의 양형표준에 관한 연구" 수행을 위한 자료수집 및 관계자 면담
5. 출장내용
 - France Paris 지방법원, 법무성 방문 및 재판 참관, Jean Paul Albert 부장판사, Philippe Corre 법무성 차관 면담, 영국 검찰청 본부(Crown Prosecution Service) 방문, Robert Bland 검사 면담
 - 면담주제 : “조직폭력범죄 대책에 관한 연구” 관련, (1) 조직범죄 신고자 및 제보자를 상대로 한 보복범죄 방지대책, (2) 범죄조직의 불법취득재산 몰수를 위한 법적장치와 작동여부, (3) 수사기관간 조직범죄 수사정보 공유실태, (4) 조직범죄 수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방안, (5) 폭력조직 유입차단을 위한 청소년 대책 및 “조직폭력 사범에 대한 양형표준”
 - 면담요지
 - 프랑스에서는 조직폭력범죄혐의자의 금융정보를 수집은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이 수사판사의 결정에 의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경찰단계에서도 검사의 승인에 의해 신속하게 계좌압수 및 추적이 가능하였으며 만약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이를 거부할 시에는 과태료 등 불이익한 처분이 내려진다고 함
 - 특히, EU통합으로 룩셈부르크를 제외하고, 모든 EU가입국가의 경우에는 범죄혐의자가 해외계좌에 범죄수익을 은닉하더라도 사법공조에 의해 신속하게 계좌를 추적할 수 있다고 함
 - 재판참관 시에는 판사가 절대적인 소송주도권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인상적 - 검사의 기소요지 진술, 중심문 등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인정된 절차가 없이 판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일일이 조서내용을 (거의 읽다시피 하며) 확인한 후 의견을 청취한 후 검사, 변호사에게 각 의견진술 기회를 주었고, 따라서 1건 당 재판에 거의 1시간이 소요되었음, Albert 판사의 경우 1주일에 2번, 통상 10건 내지 15건을 재판한다고 함 - 이었으며 이는 직권주의적 재판의 전형이라고 함
 - 영국에서는, 검찰제도가 없이 경찰이 수사과 기소를 담당하여 오다가, 1970년대부터 경찰의 기소에 대한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1985년 검찰제도를 도입하였으

나, 검찰은 경찰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기소할 것인지, 어떠한 죄로 기소할 것인지 등 공정하게 기소하는 역할에 머물고, 경찰에 대해 수사지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조직폭력범죄의 수사에 대한 노하우는 우리나라보다도 부족하였음

- 양형과 관련하여서는 대체로 경찰은 무거운 죄명으로 송치하려는 경향이 있어 검찰은 이를 완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양형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미국과는 달리 개개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판사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었으며 전과가 가장 중요한 양형인자라고 함

6. 출장성과

○ 조직폭력범죄는 갈수록 지능화, 국제화 되고 있으며 조직구축과 유지의 핵심적 요소인 자금을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것이 최근 가장 중요시 되는 과제임

○ 대륙법계 국가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France에서는 별도의 영장이 없이도 검사에게 금융계좌를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바, 신속한 자금박탈을 통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특수한 범죄에 대해서는 영장주의를 극복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해서는, 영·미, 독일, 일본에 치우쳐 있는 형사사법 연구의 영역을 넓혀 France의 사법제도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고 생각됨